



원본: 영어

No.: ICC-02/05-01/09

날짜: 2010 년 7 월 21 일

제 1 예심원

담당: 판사 실비아 스타이너, 부장판사
판사 산지 음마세노노 모나쟁
판사 쿠노 타르푸서

수단 다르푸르 사태

검찰 대(對)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(오마르 알 바시르) 건(件)

공개문건

**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의 체포 및 인도에 대해
로마 법전을 따르는 제(諸) 당사국에 발송한 추가 협조요청**

발송: 사무총장

재판소 규정 31 조에 의거, 문건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통보됨

검사실

루이스 모레노 오캄포, 검찰총장
에사 파알, 수석검사

변호인단

피해자 측 법정 대리인단

니콜라스 코프만
완다 엠 에이킨
레이몬드 브라운

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단

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피해자

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조정 및 보상 신청인

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

파오리나 메시다

피고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

자비어-장 케이타

국가 측 대리인

법정 조연자

사무처

사무총장

실바나 알비아

사무차장

디디에르 프레이라

국제형사재판소(이후 “재판소”) 사무총장은;

2005 년 3 월 31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93 에 의거,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가 재판소 검찰총장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고지하고;¹

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에 대한 검찰 측 체포영장 청구가 2009 년 3 월 4 일자 제 1 예심원 판결(이하 “판결”)로 승인되었음을 고지하고;²

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이 로마법전 58 조에 의거하여 2009 년 3 월 4 일부로 제 1 예심원(이하 “예심원”)에 의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;³

2010 년 7 월 12 일자 검찰 측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2 차 판결을 고지하고;⁴

2010 년 7 월 12 일자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에 대한 2 차 체포영장을 고지하고;⁵

로마법전 (이하 “법전”) 57 에서 60, 67, 87, 89, 91 및 97 조, 증거와 절차에 대한 법규 (이하 “법규”) 117, 176, 184, 187 및 196 조, 그리고 재판소 규정 (이하 “규정”) 31 및 111 조를 고지하고;

¹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593, S/RES/1593(2005), 2005 년 3 월 31 일 채택.

² ICC-02/05-01/09-3.

³ ICC-02/05-01/09-1.

⁴ ICC-02/05-01/09-94.

⁵ ICC-02/05-01/09-95.

법전 89 조 (1)항을 근거로 재판소는 용의자가 발견된 여하한 국가에 대해서도 그의 체포 및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을 **고려하고**;

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2 차 체포영장이 “2009 년 3 월 4 일자로 발부된 이전 영장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이전 영장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”는 점을 **고려하고**;⁶

예심원이 사무총장에게 아래 사항을 요청한 것을 **고려하고**:

(i) 1 차 및 2 차 체포영장에 포함된 기소요인에 따라 오마르 알 바시르의 체포 및 인도에 관한 추가 협조 요청과 법전 89 조 (1)항 및 91 조, 법규 187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및 문건의 포함에 대한 추가 협조 요청을 준비할 것; (ii) 법규 176 조 (2)항에 의거, 해당 요청을 적격한 수단 당국과 법전을 따르는 제(諸) 당사국, 법전을 따르지 않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송부할 것;⁷

2 건의 체포영장에 의거, 다음 인물의 체포와 신병인도를 **요청한다**:

- 이름: 알 바시르;
- 성: 오마르 하산 아마드;
- 성명: 오마르 알 바시르, 오메르 하산 아메드 엘 바쉬어, 오마르 알 바시르, 오마르 알 베시르, 오메르 알바쉬어, 오마르 엘바시르, 오마르 하산 아마드 엘 베시르 등으로도 표기;
- 생년월일: 1944 년 1 월 1 일;

⁶ ICC-02/05-01/09-94, 28 쪽.

⁷ 위와 같음.

- 출생지: 수단 공화국 쉐디 행정구 호쉐 반나가;
- 국적: 수단;
- 직업: 수단 공화국 대통령;
- 기소혐의: 다음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.
 - i) 법전 8 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
 - ii) 법전 7 조에 해당하는 반인륜범죄
 - iii) 법전 6 조에 해당하는 집단 학살

체포 및 신병인도 시:

최종 신병인도가 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을 **요청하고**;

법전 59 조 (3)항 또는 89 조 (2)항에 의거,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가 개별 국가 법정에 제기한 모든 재판 신청에 대해 재판소에 통지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;

로마법전 87 조 (4)항에 의거, 본 요청과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는 희생자, 잠정 증인 및 그 가족들의 육체적, 정신적 안녕과 안전을 위해 주의깊게 처리되고 제시될 것을 **요청하고**;

로마법전 91 조 (2)항 (c)에 의거, 체포영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나 증언 또는 정보는 신병인도 처리 과정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판소로 통지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;

법전 97 조에 의거, 본 협조요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제반 문제는 재판소로 통보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;

로마법전 89 조 (4)항에 의거, 본 협조요청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제반 문제는 재판소로 통보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;

법규 184 조에 의거,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의 신병인도가 가능해지면 이를 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지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;

신병인도가 가능해지는 즉시,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를 재판소로 이송해 줄 것을 **요청하고**;

법전 59 조와 법규 117 조가 제시하는 절차의 이행이 의무사항임을 **상기시켜 드리며**;

법전 87 조와 91 조 및 법규 187 조에 의거, 본 요청문과 더불어 다음 문건들을 **첨부함**:

- i) 2009 년 3 월 4 일 발부된 *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의 체포영장*
사본 1 부 (Annex 1);

- ii) 2010 년 7 월 12 일 발부된 *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의 2 차 체포영장* 사본 1 부 (Annex 2);
- iii)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가 완전히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법전 및 법규 내 관련조항 사본 1 부 (Annex 3).

/서명/

사무총장 실바나 알비아를 대리하여,
재판소 최고 행정관 마크 두비송

2010 년 7 월 21 일

네덜란드 헤이그